

##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1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2. 15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98.12.22)원안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세무과장)

#### 가. 제안이유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 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우리구 농지세 과세대상 경작물 : 배추, 대파, 시금치, 당근, 무우, 상추, 깻잎.

○ 작물별 평균필요비율

작물별	배추	대파	시금치	당근	무우	상추	깻잎
경비율	85	81	72	81	68	80	85

○ 부과징수: - 1년간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다음년도1,31까지)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다음년도 2월말까지)

- 확정결정 부과(다음년도 3. 16 ~ 3,31)

○ 과세표준: 농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기초공제(년560만원)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평균필요경비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농지 소득자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필요 경비율을 정하여 농지 소득금액 계산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중 우리구 지역내인 다대동과 을숙도일원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배추외 6개품종에 대하여 작물별 평균필요 경비율 결정기초 자료를 실경작자로부터 「필요경비조서」와 같이 인건비외 12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협의 및 자문자에 대한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종전 부산광역시의 승인결정과 우리구 인근지역 구와 유사하게 결정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작자는 비과세 대상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